

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9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8년 10월 17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인터넷 사용 환경 변화로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기반의 시정 참여가 축소되는 현실에 맞추어 회원 마일리지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마일리지 부여 기준 및 사용 용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서울시 홈페이지의 마일리지의 사용용도 정비(안 제8조제1항)

- (1) 사용빈도가 감소하는 “휴대 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”를 삭제
- (2) 시장이 정할 수 있는 마일리지 용도의 범위를 “그 밖에 공공서비스 이용수단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것”에서 “온라인 도서문화상품권으로의 교환 등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것”으로 확대

나. 마일리지 부여기준을 정한 조례의 별표를 삭제하면서 시장이 그 부여기준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(안 제8조제3항)

다. 띄어쓰기 오류 및 비문 표현 등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해당없음

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

다. 기 타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
(2) 입법예고(2018. 8. 2. ~ 8. 22.) 결과: 의견없음

(3)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: 별도 첨부

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말한 다”를 “말한다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제6호 중 “그밖에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게시된 정보가 항상 효율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”을 “효율적인 정보제공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”로 한다.

제5조제9호 중 “그밖에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시정 참여유도”를 “시정 참여유도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제4호 중 “그밖에” 및 같은 조 제3항 중 “그밖에”를 각각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온라인 도서문화상품권으로의 교환 등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것

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마일리지는 별표에 따르되, 시장은 마일리지 사용방법”을 “시장은 마일리지 부여기준, 사용방법”으로 한다.

별표를 삭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"이용자"란 시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.</p> <p>4. 5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말한다.</p> <p>4. 5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조(홈페이지의 운영) ① 서울특별시 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운영하는 사항과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<u>그 밖에</u> 시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3조(홈페이지의 운영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그 밖에</u>----- -----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홈페이지 정보관리) ① 시장은 홈페이지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고, <u>게시된 정보가 항상 효율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</u> 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4조(홈페이지 정보관리) ① ----- ----- -----, <u>효율적인 정보제공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</u> 홈페이지를 -----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홈페이지 게시물 관리) 시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</p>	<p>제5조(홈페이지 게시물 관리) -----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.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 등에 공개하는 등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.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1. ~ 8. (생략)</p> <p>9. <u>그밖에</u>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</p>	<p>1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<u>그 밖에</u>----- ----- -----</p>
<p>제6조(시장에게 바란다 운영) ①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<u>시정 참여유도</u>와 열린행정 구현을 위하여 이용자와 인터넷으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“시장에게 바란다”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.</p>	<p>제6조(시장에게 바란다 운영) ① --- -----<u>시정 참여유도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② (생략)</p> <p>제7조(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) ①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또는 시정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.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) ① 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그밖에</u>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</p> <p>② (생략)</p>	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그 밖에</u>----- -----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상품권 등의 종류·액수 <u>그밖에</u>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.</p>	<p>③ ----- ----- <u>그 밖에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8조(마일리지 제도의 운영) ①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또는 시정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홈페이지 이용자에 대하여 그 이용 목적·횟수 및 시정에의 기여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그 누적된 점수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(mileage)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.</p>	<p>제8조(마일리지 제도의 운영) ① 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1. (생략)</p> <p>2. <u>휴대 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</u></p> <p>3. <u>도서문화상품권 지급</u></p> <p>4. <u>그 밖에 공공서비스 이용수단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것</u></p>	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온라인 도서문화상품권으로의 교환 등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것</u> <삭 제> <삭 제></p>
<p>② (생략)</p> <p>③ <u>마일리지는 별표에 따르되, 시장은 마일리지 사용방법 및 그 밖에 마일리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</u>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시장은 마일리지 부여기준, 사용방법</u>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	----- -----.
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 제출범위)

제3조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일리지 부여 기준 및 사용 용도를 실효성 있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마일리지 예산으로 운영 가능하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

4. 작성자 :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서은지